

『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박순이 의원 외 10인

2. 제안이유

-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- 보조금 정산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(안 제9조제4항)
- 보조금 집행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단 부득이 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첨부(안 제9조제5항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
- 「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」 및 「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」
- 「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기준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최근 사회단체 보조금의 유용 등으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의 정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
- 보조금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

○ 조례안 검토결과

-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행정안전부 예규인 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”에도 보조금 집행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,
- 보조금 정산결과의 시 홈페이지 공개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의 의무화를 규정한 금번 개정 조례안은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